

Muan Web Contents

2021년 12월 07일 21시 26분



목차

목차	2
신규등록	3
신규등록 안내	3
지역무관등록	3
수수료	3
관련법규	3
구비서류	3
유의사항	4
과태료	4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저당권설정/말소등록	임시운행허가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등록증/번호판/봉인재교부
등록원부발급			

신규등록 안내

지역무관등록

등록에 관한 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 및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은 다른 등록 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음 (단, 영업용 및 차고지를 증명하는 2.5톤이상 화물, 특수차 및 매매를 목적으로하는 상품용 차량 제외)

수수료

- 증지대-2,000원, 인지대-3,000원, 취득세, 공채(전라남도 내)
- 증지대-2,500원, 인지대-3,000원, 취득세, 공채(전라남도 외)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 조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수입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신규출고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용도 - 부활등록용) ▪ 수입차량 : 수입신고사실증명 ▪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임시운행 허가증 및 번호판(2개) ▪ 세금계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차는 납세의무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본인 신분증(오신 분 신분증) (위임시 : 위임 받는자의 신분증,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위임자의 도장 날인)) ▪ 법인 : 오신분의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위임장에 법인도장 날인)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신분증(오신분)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증, 장애인은 장애인증,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 국내거소자 : 거소자실증명서(출입국관리소 발행)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 · 규약 · 인가서

	사단 및 단체 구분	구비서류
추가서류	종교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회의결서 사본 대표자사용인감 재단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설립 인가서 사본 정관 회의록 재단법인발행 소속증명서 재단법인발행 종교단체 직인확인서 고유번호 증명서(세무서) 사업자 등록증
	관용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량정수 배정서 (대폐차의 경우 : 차량변경승인서) 차량변경승인공문(대폐차매각경우)
	말소차량부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검사서(자동차검사소 발행) 도난해제 확인서 (경찰서장 발행) ※ 소유권이전과 동시 신규등록의 경우 이전등록서류 참조
	영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 등록, 인가서류
	수입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작사 소음배출가스 인정서(자기인증면제차량 제외) 딜러계약서사본(수입자와 판매자가 다른 경우 제출) 수입중고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도증명서 안전검사증 수입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
	해외에서 이사회물 (1년 이상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면제차량에 한함)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해외에서 이사회물 (1년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검사증명서(자기인증면제차량에 한함)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개별소음인증서 및 개별배출가스인증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차량으로 개조가 필요하면 등록 전에 구조변경완료 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등록 후 특수차량 개조는 불가능)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2003년1월2일부터 사업장 등록불가 합니다. 임시운행번호판을 도난 또는 분실시는 경찰서에 신고하여 경찰서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시면 가능합니다.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특수자동차와 적재량 2.5톤이상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사용신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친권자(부,모)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결함등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하면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판매업체를 통하여 반납기간내 반납하여야 합니다.(매출취소) 신규등록 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이 불가능 할 경우 사전에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을 반납 할 수 있습니다. 단 추가로 임시번호 및 허가증 발급은 불가능하나 신규등록은 가능 합니다.(반납 후 운행 절대불가)

과태료

구분	기간	금액
임시운행번호판 미반납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3만원
	10일 초과 후 매1일마다	1만원(최고 100만원)

(<http://www.muam.go.kr>)

구분 임시운행 목적기간 위반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기간	5만원 금액
	10일 초과 후 매1일 마다	1만원(최고 100만원)
수출말소차량 재등록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5만원
	10일 초과 후 매1일 마다	1만원(최고50만원)
기타사유 말소재등록	재 등 록 시	10만원
등록한자가 번호판 · 봉인 미부착	적발과 동시	50만원
분실 · 훼손된 번호판 및 봉인 미신청	적발과 동시	10만원
번호판 미부착 또는 미봉인 운행	적발과 동시	30만원
자동차등록증 미비치 운행	적발과 동시	5만원
차대 또는 원동기번호 훼손	적발과 동시	100만원

COPYRIGHT © MUAN-GUN. ALL RIGHTS RESERVED.

MUAN

Web Contents

 무안군